

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석(도봉) 의원 대표발의)

의안
번호 2311

발의년월일 : 2017년 12월 15일
발 의 자 : 김용석(도봉) · 서윤기 · 이순자
유광상 · 김인호 · 황준환
송재형 · 최판술 · 김상훈
문영민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의사상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표창 및 포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,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예우 등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예우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른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.</p>